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로 장애는 줄이고, 일상복귀는 앞당긴다

- 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재활의료기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그간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년 3월~’23년 2월) 45개소, 제2기(’23년 3월~’26년 2월) 53개 기관을 지정·운영하였다.

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붙임1)

* 주요 지정기준(붙임3) :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사회복지사 수 ④병상 수(60개 이상) 및 필수 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⑤장비 ⑥진료량 ⑦재활환자 구성비율(40% 이상) ⑧재활의료기관 인증 또는 급성기병원 인증 등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조건부 지정*하였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1년 이내에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 조건으로 지정(미달 시 자동 지정취소)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6.2월)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붙임3)

* 기존 재활치료 중 유사한 서비스를 묶어 보상하는 집중재활치료료(15분=1단위),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 환자군별 인정하는 기간(30일, 60일, 180일) 동안 입원료 체감제(입원기간이 길어질 수록 병원이 받는 입원료 일부를 감산하는 제도) 미적용하여 조기퇴원 부담없이 집중재활

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 수가 세부 내용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참고(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이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발병 또는 수술 후 30, 60, 90일 이내)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 및 대상 질환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가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나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다-1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다-2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다-3	양측 슬관절 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하지부위 절단
그 외	마	비사용 증후군

* 환자군별 발병 또는 수술 후 입원시기(치료 종료일): <가, 나> 90일 내 입원(~180일 이내), <다-1> 30일 내 입원(~30일 이내), <다-3>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내 입원(~30일 이내), <다-2, 라, 마> 60일 내 입원(~60일 이내)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부 (033-739-5847, 5849)에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 <붙임> 1.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3.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수가 지원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044-202-2920)
		담당자	사무관	배홍석 (044-202-247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책임자	과 장	유정민 (044-202-2730)
		담당자	사무관	이민정 (044-202-2733)
지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부	책임자	부 장	방현주 (033-739-5830)
		담당자	팀 장	손승경 (033-739-5846)
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책임자	부 장	조향심 (033-739-1630)
		담당자	팀 장	정경순 (033-739-1631)
분류체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	책임자	부 장	이안주 (033-739-1120)
		담당자	팀 장	신미정 (033-739-1121)



붙임 1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지정기간 : 2026. 3. 1. ~ 2029. 2. 28.]

(지역별, 가나다 순)

지역	연번	의료기관명
서울 (11)	1	국립재활원
	2	로이병원
	3	서울재활병원
	4	서울큰나무병원
	5	서울퍼스트병원
	6	송파드림재활병원
	7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자립병원
	8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9	제니스병원
	10	청담병원
	11	포근한병원
부산 (7)	12	동아대학교대신병원
	13	워크재활병원
	14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15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봉생힐링병원
	16	재단법인 일신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재활병원
	17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18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대구 (6)	19	남산병원
	20	대구보건대학교병원
	21	미래병원
	22	의료법인 대구의료재단 케이병원
	23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24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더좋은병원
인천 (3)	25	미추홀병원
	26	브래덤재활병원
	27	서송병원
광주 (3)	28	광주365재활병원
	29	우암병원
	30	호남권역재활병원
대전 (5)	31	다빈치병원
	32	대전웰니스병원
	33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34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재활병원
	35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지역	연번	의료기관명
울산 (1)	36	북울산병원
경기 (16)	37	국립교통재활병원
	38	로체스터병원
	39	린병원
	40	마스터플러스병원
	41	바로웰병원
	42	베데스다병원
	43	분당베스트병원
	44	수원센텀병원
	45	에스알씨(SRC)재활병원
	46	위례재활의학과병원
	47	윤강병원
	48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49	일산복음재활병원
	50	일산중심재활병원
	51	해성병원
	52	휴앤유병원
강원 (2)	53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54	영광병원
충북 (4)	55	씨엔씨푸른병원
	56	아이엠재활병원
	57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재활병원
	58	첼로병원
충남 (2)	59	천안재활병원
	60	SG삼성조은병원
전북 (1)	61	드림솔병원
경북 (5)	62	경북권역재활병원
	63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재활병원
	64	의료법인 승미의료재단 구미으뜸병원
	65	의료법인 영주의료재단 명품회복병원
	66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경남 (4)	67	바른병원
	68	예손재활의학과병원
	69	의료법인희원의료재단 래봄병원
	70	희연재활병원
제주 (1)	71	제주권역재활병원

붙임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가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나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다-1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다-2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다-3	양측 슬관절 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하지부위 절단
그 외	마	비사용 증후군

* 다-3의 복잡기준이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2014-113호)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2502호, 2014.7.22.)에 따른 행위 복잡기준 (1),(2),(5),(6),(7),(10),(11) 해당 항목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가. 환자구성의 기준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다-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다-3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라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마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 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 「입원시기」라 함은 지정기준 가목에서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 경과기간에 해당하며

- 「종료일」은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기간 중 환자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 * 가 및 나 대상환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성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원시기가 90일을 초과하더라도, 입원시기 및 종료일을 발병 또는 수술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적용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다-1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다-2의 입원시기를 적용한다.
 - * 다-1 대상환자 중 골절 내고정술이나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는 다-2의 종료일을 적용한다. 단, 3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다-3 대상환자 양측 슬관절치환술(단측 또는 양측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시기는 동일 입원기간 내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원해야함을 말한다. 단,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대상환자군 마. 비사용 증후군의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에 관한 세부기준:

- 1) 도수근력검사는 상대가치점수 나-661 도수근력검사로 측정부위는 양측 상·하지 근육 중에서 어깨관절 외전근, 팔꿈치관절 굴곡근, 손목관절 신전근, 고관절 굴곡근, 무릎관절 신전근, 발목관절 신전근(배측 굴곡)의 12개 근육을 측정하고 총점은 60점으로 한다.
- 2) 일상생활동작검사는 상대가치점수 나-771 가. 기본적 일상생활능력으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 3) 버그 균형검사는 상대가치점수 나-661-1 버그 균형검사로 총점은 56점으로 한다.

3.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

가.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재활손상대분류* 목록

대상 환자군	재활손상대분류 (KRIC)		정의
뇌손상	01	뇌졸중	뇌혈관의 출혈 및 허혈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02	외상성 뇌손상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03	비외상성 뇌손상	신생물, 뇌염, 염증, 무산소증, 대사성 독성 등에 의한 뇌손상의 경우
척수손상	05	외상성 척수손상	외상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경우
	06	비외상성 척수손상	신생물, 척수염, 염증, 척수병증, 이분척추 등에 의한 척수손상인 경우
뇌·척수 중복손상	07	뇌·척수 중복손상	외상으로 인하여 뇌와 척수에 다발성 손상이 있는 경우

대상 환자군	재활손상대분류 (KRIC)		정의
근골격계	12	골반·대퇴 골절	골반 및 대퇴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골절 또는 골절에 따른 수술을 받은 경우(병적골절은 제외)
	13	하지 관절치환	관절염 등으로 고관절 또는 양측 무릎 치환술을 받은 경우 (무릎 치환술은 단측 또는 양측 복잡 수술에 해당)
	15	주요 다발성 골절	이전 관절성형술(치환술)로 인한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뇌·척수 손상이 있는 경우는 02(외상성 뇌손상) 또는 05(외상성 척수손상), 07(뇌·척수 중복손상)으로 분류)
절단	14	하지 절단	절환 또는 외상으로 인한 하지부위 절단의 경우 (족부절단은 제외)
비사용 증후군	22	비사용 증후군	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다른 KRIC에선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재활손상대분류(KRIC, Korean Rehabilitation Impairment Category):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재활손상대분류

나. 대상환자군 마. 비사용 증후군의 재활손상대분류 예외 적용:

비사용 증후군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재활손상대분류 목록에 대하여는 환자의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비사용 증후군의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환자군 마. 비사용 증후군에 포함할 수 있다.

재활손상대분류 (KRIC)		정의
41	파킨슨병	파킨슨병
11-1	길랑-바레 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
20	심장질환	심장 질환 및 수술로 인한 심기능 저하인 경우
21	호흡질환	호흡기 질환 및 수술로 인한 폐기능 저하인 경우
24	신생물	악성 신생물로 인한 치료(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면역요법, 호르몬요법 등)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붙임 3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수가 지원

구분		세부내용	
병원 지정 기준	필수 진료과목	재활의학과(2024.1.1. 기준으로 설치)	
	실적 평가기간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1년간 실적 평가 시설 및 장비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인력 기준	상근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단, 지역완화 추가 적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 2명	
		인력	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하되, 150개 병상 초과 시 2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 산출시 유관진료과목(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2분의 1명으로 적용하며 최대 2명 인정		
시설 및 장비 기준	병상수: 60병상 이상 4개 필수시설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각 치료실에는 필수 장비 구비		
진료량	재활치료와 연관된 25개 질병군 비율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상위 30분위 이내		
환자 구성비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 유지 * 지역균형 고려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건부 지정 가능		
의료기관 인증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		
수 가	-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 - 통합계획관리료 · 초회: 4인 5만 1,430원/ 5인 이상 6만 4,280원 · 2회이상: 4인 3만 7,270원/ 5인 이상 4만 6,580원 · 퇴원계획: 7만 6,350원 - 통합재활기능평가료 · 중추신경계 7만 7,110원/ 근골격계 4만 9,100원/ 비사용증후군 6만 8,690원 - 재활치료료(단위당 수가, 15분=1단위) · 재활치료료Ⅰ 3,380원/ 재활치료료Ⅱ 7,580원/ 재활치료료Ⅲ 1만 7,910원 - 지역사회연계료: 기관내 활동 2만 3,750원/ 현장방문 5만 740원 -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료: 7만 8,330원 - 방문재활 · 방문재활계획수립료: 5만 1,430원 · 방문재활치료료: 치료사 2인 18만 9,330원/ 치료사 1인 사회복지사 1인 15만 9,190원/ 치료사 1인 11만 4,590원 · 방문재활관리료: 3만 2,770원		
환자분류체계	한국형재활환자분류체계(KRPG, Korean Rehabilitation Patient Group)		